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062 발의연월일: 2022. 6. 20.

발 의 자:김영진 · 권인숙 · 김병욱

김윤덕 · 김주영 · 노웅래

박찬대 • 신영대 • 우원식

윤건영 • 인재근 • 전용기

한병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명령을 선고할 수 있고 또한 공개명령 기간 동 안 법률에 규정된 대상자들에게 이 명령을 고지할 수 있음.

하지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고지대상자 범위가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고지대상자와 같은 읍·면·동에거주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정보가 전혀 고지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 아동복지시설 중 지역아동센터의 장에게만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의 등록정보를 고지하던 것을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으로 고지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0조제5 항). 법률 제 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5항 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각 아동복지시설의 장,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각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의 고지정보는 고지대	⑤
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	
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	
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	
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 • 면사무소와 동 주민자	
치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u></u>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	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각
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의 장, 「청소년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	<u>각 청소년복지시설의 장</u>
설의 장에게 고지한다.	